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perty Inheritance of the Korean Family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강사 문영소

교수 김양희

Dept.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Chung Ang University

Lecturer : Moon, Young So

Prof. : Kim, Yang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a difference the individual family value and relationship make on the inheritance consciousness by focussing on rights succeed property among the inheritances rights of family.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about 450 married person, with children, over 40 year, and among them 384 cases are used in final analysis.

Inheritance consciousness of the Korea family shows that the property inheritances to greatly different from the inheritance the family head rituals according to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s. That is to say the succession of the property is decided by inheritances of the individuals, where-as these of the family head and rituals are done by the family norm. such results tend to be made due to the fact that Koreans think of a duty to father a son and make him succeed to the head of the family on the basis of the strong blood tie of the family, that Koreans think it important to keep their family fame, and to contain the family existence, i. e, they respect their patriarchal system.

I. 서 론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 및 호주권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란 용어는 「sucession」과 「inheritance」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 서 전자를 「地位의 繼承」, 후자를 「財產의 繼承」으로 하여 구별하고 있다(신영호, 1987). 전근대사회에서 상속은 sucession의 준칙이 적용되어 인격 및 지위의 계승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재산의 상속은 인격·지위의 계승에 따른 이면적인 재산적 권리의 무의 이전으로 행하여져 왔다. 또한 근대사회의 상속도 제사상속, 신분상속의 두 단계를 거쳐 재산상속이 인정되는 과정으로 보아진다.

물질의 상속이란 세대간의 물질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배의 시점과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분배의 시점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로서 피상속인이 가족 내에서 누리고 있는 권위의 확실성과 부모자녀간의 유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부모가 그의 재산을 가능한 한 빨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의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배의 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가의 문제이다. 모든 상속인에게 같은 액수가 분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속인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가족구성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조정문, 1990). 첫째, 재산흐름의 유형은 가족구조를 나타낸다. 즉, 상속인이 재산을 어느 정도 분배받는가를 보면 그 상속인의 가족 내에서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상속인에 누가 포함되는가를 보면 가족집단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둘째는 재산상속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중의 하나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성원 간의 결속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축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자녀의 인생 출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를 조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재산상속제도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른 변천 과정을 거쳐왔으나, 재산상속제도는 사회구조-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소 그 변화의 속도가 완만하다. 혼인, 친족생활 및 유산의 상속과 같이 생활 자체에 직결되어 있는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생활습관으로 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그 법을 해석·적용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가족생활, 가족 규범과 같은 사회내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의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가족가치와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상속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내의 재산상속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여 한국가족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재산상속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 가족 내 권력 구조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여 한국 특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가족의 재산 상속 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생활 가치의식과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자녀 관계와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상속이란 행위는 그 시대의 사상과 관습을 반영한 하나의 제도이므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상속관행과 현재 상속법의 규정을 살펴보겠다.

1. 조선시대 이전의 재산 상속법

한국 고대 재산상속제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유혜종, 1989) 삼국 이전의 각 시대의 재산 상속에 관한 규정을 직접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없지만 몇 가지 기록에서 당시의 상속 규정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자조선(한씨조선)의 재산상속은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속의 객체로서 금전이나 여타 물건 또는 노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에서의 재산상속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적장자 우위의 상속 원칙이 지켜졌음을 알 수 있으나 단독상속의 원칙이 지켜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로 「李夫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籍沒財物)」¹⁾라는 기록을 보아 전왕의 제에게 상당한 재물과 이심을 가질 정도로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상속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상속분은 다를지라도 공동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사유재산권은 노비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에 이르게 되었다. 삼국 시대 재산상속인의 범위는 8촌에서 12촌 이내의 친족이고, 재산상속인의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형제자매, 제3순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며 신분과 관련된 경우 선순위로 하고 연장자를 선순위로 했으며 적자를 선순위로 했다. 재산상속의 범위는 토지를 포함한 재물이며 인간 중 노비도 포함되었다.

삼국 시대 재산상속의 형태는 사망상속이 주로 행해졌고, 유언상속과 법정(관습법)상속 모두가 인정되었으며 임의상속과 공동상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상속분은 자녀가 균분이며,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것이 왕위와 관련된 경우는 정치적 힘에 의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친족 사회나 관에서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의 상속 재산은 조업, 가업 부모재, 재산, 자산 등으로 불리워지고, 개인에 의해 매매·증여·세습이 가능한 자유재산이 그 대상물이다. 고려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문헌은 대부분이 노비와 토

지를 중심으로 논술되어 있다. 노비의 상속은 자녀 균분상속이 행해졌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으나 균분이 범적 규범이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기사는 없다. 그러므로 노비는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녀 균분상속이 원칙이었으며 奴主의 의사에 따라 자녀간에 다소 차이가 두어졌던 것(박용운, 1982)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정은 단지 직역 담당자인 부병과 향리 등에게 지급된 군인전과 향리전을 의미하고 그 직의 세습과 함께 田丁이 세습된다. 전정의 승계순위는 적자 → 적손 → 동모제 → 서손 → 여손의 순위로 하였는데 이것은 가계 계승의 순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한 요청으로 국가가 전정이 갖는 직역의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職에 대한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는 승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몇몇의 정전기사를 살펴보면 여계를 통해 승계가 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고려 사회 가족 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거의 동등하게 인정받는 존재였음을 알게 한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 토지를 의미한다. 문종 조에 제정된 양반 공음전은 국가에서 관인 신분 유지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유지로 상속이 인정되었고 매매, 처분도 가능하였다. 전급 대상의 순위는子가 가장 우선 시 되었고 다음으로는 사위가 전급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처가에서 實子에 가까운 존재로 대접을 받았던 가족 제도의 영향인 듯하다. 공음전은 고위 관인에게 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성격상 관인이 될 수 없었던 여성은 직접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음을 틀림없다. 그러므로 여성은 전제로 한 여서가 수급 대상이 된 것이다. 無子인 경우 庶가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게 상속이라는 면에서 차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계부 우가가 이심을 품으매 위거가 계부부자를 죽이고 재물을 몰수했다.

2. 조선시대의 상속법

조선시대의 재산상속법은 成文律인 경국대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대표할 수 있으나, 당시의 실제 관행인 관습법과 일치하지는 않고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법적 효력이 관습법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작용하였으며, 또 어떻게 두 법간의 격차를 조화시켜 있는 가라는 문제는 쉽게 밝혀 낼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재산상속법의 지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재산상속의 기본원리

조선조에서도 재산상속을 규율하는 대전제는 祖業思想이다. 즉, 상속 재산인 가산을 祖先으로부터 승계하여 자손에게 전계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상속 재산의 기본 관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 재산을 祖業으로 보는 관념에서 다음과 같은 재산상속상의 원리가 도출된다.

첫째는 혈족주의이다⁴⁾. 즉, 祖業을 승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祖와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者에 한한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촌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 祖業은 혈연과 마찬가지로 자손에게 까지 계속하여 승계 되어야 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해서는 안되고⁵⁾, 妻不한 경우에도 우선 근친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청도 이러한 관념의 소산이다.

둘째는 균분주의이다. 고려 사회는 장자손을 특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가족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 점은 조선조로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말부터 본격적으로 계승된 종법제는

- 2) 여기 혈족주의라 함은 계르만법에서와 같이 家共同體의 구성원리에서 출발하되 씨족단체를 전제로 하여 무제한의 혈족 주의를 취한 계르만법상의 것과는 다르다. 혈족주의라 함은 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자연적인 혈족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 신영호(1987), 공동상속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87.
- 3) 경국대전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증여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世宗實錄〉 卷97 8월 28일조의 受敎가 단적인 예이다. : 신영호, 전계서, p.188.
- 4) 朴秉豪, 韓國法制史巧, 법문사, 1974.
- 5) 신영호, 전계서, p.191.
- 6) 〈세종실록〉 권31 8년 1월 22일 (丁巳)條의 受敎 중.

조선의 제사를 승계 하는 자를 우대해야 할 필요를 놓았고, 이는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은 상속인 결정의 근원을 혈족주의에서 찾았기 때문에 청자녀를 적자녀와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심한 차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요소가 없는 자 사이에서는 균분주의가 지켜졌다.

셋째는 분할주의이다.⁴⁾ 경국대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형법의 보통법으로서 적용되었던 大明律의 別籍異財禁止條에 의하여 지속되었다. 이 규정은 자녀가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재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생전에 가산을 분할하여 실질적인 재산상속을 행하거나 분할을 지정할 수 있었다.

넷째는 유언 자유의 제한⁵⁾이다. 〈遺書雖一家之法, 不可不從〉이라는 말과 같이, 부모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해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같은 유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그 전제인 祖業의 법리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며, 법정의 상속 순위를 변경한다거나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등의 유언은 인정되지 않았다⁶⁾.

2) 상속 순위

제 1순위는 자녀의 공동 상속이다. 여자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여자의 재가 여부를 불문한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하며 대를 한정치 않는다. 제 2순위는 有妻로 자녀가 없는夫의 재산을 有妻가 상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夫에게 사후 양자를 들어오는 것을 예정하고, 有妻가 사후 양자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상속하였다가 양자를 계후하게 되면 그에게

상속시킨다. 그러나 사후 양자를 계후하지 않으면 有妻가 생존 중에 한하여 상속하고 그가 사망할 때 그 상속 재산은 망부의 本族에게 반환한다⁷⁾. 반대로 자녀가 없는 忘妻의 재산은 夫가 상속하지 못하고 忘妻의 本族에게 반환한다.

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本族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有妻도 없을 때에는 제 3순위로 피상속인의 本族이 상속하게 된다. 즉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夫祖로 부터 전계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가장 가까운 本族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에는 그들의 직계비속이 대습하여 제 1차적으로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에게 형제자매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祖까지 환계하여 祖의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백숙부, 고모 또는 그들을 대습하는 종형제자매등이 공동상속한다. 제 4순위는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⁸⁾.

3. 현행 민법에서 본 상속법

현대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1959년에는 특히 친족 상속법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 여성단체 연합회, 여성 문제 연구원 등의 친족 상속법에 관한 건의안 민사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한 35개항에 걸친 제안은 헌법 정신 존중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무시된 채 비민주적인 가족법이 1960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된 것이다. 그 후 30여 년 동안 한국 민법전은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중 2, 3, 4차의 개정은 재산법에 관한 개정이었고 친족과 상속편의 개정은 1, 5, 6차의 개정인 셈이다.

1차개정(1962년 12월 29일)과 5차개정(1977년 12월 31일)은 1960년의 민법 제정 당시의 골격인 가부장제 즉 호주 상속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민주적이며 남녀 불평등한 가족법을 존속하였다. 그 중 1차 개정은 친족법 중 법정분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 밖의 개정으로서는 호적법에 1개조의 신설,

친족법에는 3개조의 개정이 되어 결국 합계 5개조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5차 개정은 민법전 제도 17년 후인 1977년에 실시되었지만 그것은 7개 항 14개조에 걸친 개정이었다. 상속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법정상속분 중 有妻(여자 배우자)의 상속분을 유리하게 한 것, 상속편 중 제4장에 기여분을 신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재산상속의 개념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호주라는 가족 제도적 신분의 승계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재산법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 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선의, 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 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 되지 않는다(제1005조 단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된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즉,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예컨대, 아들, 딸 등)과 직계존속(예컨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가족 그리고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 개시 때부터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 재산을 상속한 것이 된다(민법 제1005조, 제187조 참조).

7)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無子女夫妻奴婢 雖無傳係 生存者 區妻 本族外不得 與他」라 되어 있다.

8)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無本族則屬公」이라 되어 있다.

2) 상속의 형태

상속 형태는 첫째, 무엇을 상속하느냐에 관하여는 제사 상속, 신분상속, 재산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날 상속 제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상속이며 강제 보존이나 강제 분할이나, 자 유유증(유언)이나 등 세 가지이다. 둘째, 누가 상속 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1인상속(단독상속)과 공동 상속이 있다. 셋째, 상속인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다.

상속 개시를 피상속인의 생전 중에 인정하는 형태를 생전 상속이라 하며 상속 개시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하는 형태를 사망 상속이라 말한다. 근대적 상속 제도는 사망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 및 상속분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를 말하며 유언 상속이란 상속인과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한다.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으로 한정되어, 피상속인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나 전 유산을 단독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말하며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 상속법은 호주 승계에 있어서는 단독 상속제(단독 승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공동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의 형태를 강제 상속이라 말하며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인정하는 상속의 형태를 임의상속이라고 말한다.

균분상속이란 각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비율이 평등한 경우를 말하며 불균분상속이란 그 비율이 평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의 개정 전에는 피상속인과 같은 호적 내에 있는 여자 상속인과 같은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상속인과의 상속분이 평등하지 않았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또한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는 처가 상속하는 경우와 남편이 상속하는 경우에 따라 상속분이 평등하지 않

았다(민법 제1009조 제3항). 그러나 1990년 민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여자 상속인의 상속분은 같은 호적 내에 있던 모든 관계없이 평등하게 되었으며(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도 평등하게 개정되었다(제1009조 제2항).

3) 상속분

상속분이란 각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의무의 비율, 즉 배당 받을 몫의 비율을 뜻한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 전, 상속 재산의 1/2, 1/2과 같이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속분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계산한 결과 각 공동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할 재산가액인 "상속분액"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인이 적극, 소극 재산에 각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 하기 때문에 상속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속분률을 의미하는 보통의 의미의 상속분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유언(지정 상속분)」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 상속을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상속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첫째, 공동 상속이어야 하며, 둘째, 사망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산 분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제1112조 내지 제 1118조), 유언이 없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분할 방법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제1012조), 공동 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 규정에 얹매일 필요 없이 자유로이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대법 87.2.10. 판결, 86누470). 그 밖에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특별 수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참

작하고(제1008조 참조), “기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결정하게 된다(제1008조의 2).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정읍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로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70.3%가 남성이고, 연령별에 따른 표본의 분포를 보면 40-45세가 5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6-50세가 22.4%이며 50세 이상은 19.8%로 나타나 한국가족의 변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세대에 속한 사례가 많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54.7%이고, 전문대 이상이 34.3%, 중학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지역을 조사한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직업은 사무직이 57.6%, 자영업주 12.8% 관리직 9.4% 기술직 4.9%이고 월수입은 151~200만원인 사례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26.3%가 월수입이 101~15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4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3세대 직계가족이 34.9%로 나타나 도시지역보다는 직계가족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형제순위를 보면, 차남이하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남 27.1%, 차녀이하가 14.6%이고 외아들(3.1%)이거나 외딸(2.1%)인 사례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족생활 가치의식 척도는 김일명(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효도에 대한 의식(6),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4),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9),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5), 친척에 대한 의식(2),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2)으로 구성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가치 의식을 5점에 가까울수록 현대적 가치의식을 나타내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46이다.

부모자녀 관계는 애정과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애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icirelli(1983)의 연구를 참고로 임춘희(1987)가 제작한 13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는 애착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682고, 신뢰감(4), 애착(3), 기대(4), 개방(3), 이해(3)로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에 가까울수록 애착감이 낮은 관계를 5점에 가까울수록 애착감이 높은 관계를 나타낸다.

갈등은 지각되는 갈등임을 전제로 하여 Argyle-Furnham(1983)의 대인간의 갈등척도를 기초로 5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한 안현애(1986)의 5개 문항과 관계의 소원함과 · 의견대립 · 예상되는 갈등 · 종교적 갈등 · 성격문제 · 지나친 기대나 간섭 등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고려하여 임춘희(1987)가 제작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갈등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776이고, 생활갈등(6), 세대간 갈등(4), 심리적 갈등(3)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서 1점에 가까울수록 갈등이 높고 5점에 가까울수록 갈등이 낮은 관계를 나타낸다.

재산상속 의식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현재 상속법과 가족들의 상속 관행을 참고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진술되어 있는 상속에 관한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찬성하는 것이다. 재산상속 의식은 대상(7), 시기(2), 상속분(5), 기타(4)을 포함하여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Cronbach- α)는 .716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996년 7월1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100부의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1996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10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26부를 제외한 총 384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가족가치 의식, 부모자녀관계, 가족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가족생활 가치 의식과, 부모자녀 관계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하위 요인을 추출하였고, 척도로 사용된 가족생활 가치의식, 부모자녀관계, 상속의식 구성요인은 Cronbach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과 부모자녀 관계와 상속의식의 상호관련성은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

재산상속 의식을 상속대상, 상속시기, 상속분, 상속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각 문항에 대한 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속대상에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생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문항으로 나타나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상관없이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은 다른 문항과도 관련성이 있어 ‘아들에게만 상속한다’와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는 문항은 평균값이 낮은 반면 ‘손자녀에게만 상속한다’와 ‘종가집에 상속한다’는 문항은 ‘아들과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보다는 평균값이 높아 애정이나 생전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대상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재산 상속 시기를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생전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전에 재산상속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간에 재산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상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산 상속 대상에 관한 결과에서 보듯이 법적 상속 대상보다는 특정한 대상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상속을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재산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한다’는 문항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아 실제 재산 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상속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균값이 높은 문항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한다’로 성별이나 출생순위보다는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 상속된 재산의 효용가치가 가장 큰 대상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속분에 있어서는 공동 균분 상속을 전제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많이 주는 것에는 동의하는 반면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상속분의 결정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분에서 남녀 차별’과 ‘남자에게 많이 준다’라는 문항의 평균값보다는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한다’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높아 아직도 장자 우선의 원칙을 추구하는 경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장남이라는 출생순위를 고려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노후를 의탁하는 자녀에게 상속분을 좀 더 고려하는 상속대상에 대한 의미부여에 따른 행위로 추측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상속하는 것보다는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자를 들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한 집안이라는 의식을 갖고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한국 가족의 혈연중심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 경우를 ‘자녀에게 하지 않는다’와 ‘사회에 환원한다’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두 문항 모두 평균값이 3.0이하로 비교적 지지하는 정도가 낮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에 환원하려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재산상속에 대한 의식

상속의식	문항	M
상속 대상	1. 상속 때의 재산분배는 딸에게는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옳다.	2.09
	2. 재산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2.42
	3. 재산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하고 싶다.	2.65
	4.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2.67
	5.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종가집에 상속한다.	2.36
	6. 재산은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	2.15
	7. 재산은 손자녀에게만 상속한다.	2.56
상속시기	1. 재산상속은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2. 재산상속은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9 2.57
상속 분	1.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96
	2. 재산상속은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어야 한다.	2.62
	3. 재산상속은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2.90
	4.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한다.	3.49
	5. 재산상속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3.08
아들 없는 경우 상속	1. 아들이 없는 경우에 재산을 친척에게 상속한다.	2.37
	2.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상속한다.	2.16
상속하지 않는 경우	1. 재산상속은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6
	2.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	2.44

2. 가족생활 가치의식과 재산상속 의식

가족생활 가치의식과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속대상에 관한 의식을 보면, 효에 대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종가집에 상속한다'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효의식은 가문을 중시 여기는 것으로 전통적인 효 의식을 추구하는 경우 가문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종가집에 재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사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종가집에 재산상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가집에 재산상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가계의 존속을 우선 시하는 효와 제사 의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상속 시 아들에게만 한다'와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 '종가집에 상속한다'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적인 성역할 의식을 추구하는 경우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부모와 독립된 핵가족을 추구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의식과 친족의식을 지닐수록 '아들에게만 상속한다', '종가집에 상속한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을 중심으로 남녀의 구별이 뚜렷한 가족생활을 추구하고 친족관계를 중시할수록 재산을 특정 대상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장자중심의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상속시기는 친족에 대한 의식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데 현대적인 친족의식을 추구할수록 생전에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다. 친족의식은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적인 친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 핵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두 분가한 가족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후에 법적 규정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미리 상속을 하는 것이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 가치의식은 대안적인 가족형태를 제외한 모든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족생활 가치 의식과 재산상속의식의 관련성

상속의식	문 항	효 의식	제사 의식	성역할 의식	가부장제 의식	친족 의식	대안적 가족의식
상속대상	아들에게만 상속	.067	.094	.017**	.179*	.216**	.021
	상속 받은 자녀는 부모를 부양	-.066	.013	.144*	.082	.085	.022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상속	.000	-.007	.105	.083	.129	-.052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에게 상속	.112	.025	.058	.036	.040	-.061
	종가집에 상속	.224*	.352**	.279**	.220**	.238**	.038
	배우자에게 상속	.017	.106	.109	.043	-.018	.087
	손자녀에게 상속	-.216	-.105	-.112	-.029	-.166*	-.029
상속시기	생전에 미리 한다	.101	.029	.119	.163	2.05*	-.012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085	-.055	.014	.000	.020	-.011
상속분	여자와 남자의 상속분 차이는 당연	.143*	.190**	.445**	.317**	.202**	-.034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준다	.092	.178**	.458**	.297**	.313**	-.008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	.120	.179**	.489**	.292**	.274**	-.066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	.004	-.019	.044	.025	.017	-.120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	.108	-.040	.102	.222**	.078	-.044
아들 없는 경우 상속	친척에게 상속	.069	.061	.100	.085	.027	.196**
	양자를 들여 상속	.102	.199**	.246	.071	.202*	.036
상속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독립성을 위해 상속하지 않음	-.049	-.056	.096	.147*	.091	-.076
	사회에 환원	-.026	-.015	.032	.044	.080	-.016

* P<.05 ** P<.01

효, 제사, 성역할, 가부장제, 친족에 대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주어야 한다’와 ‘장남에게 많이 주어야 한다’는 문항은 제사, 성역할, 가부장제, 친족에 대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가족 내에서 성역할에 따라 남녀를 차별하거나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상속분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장자 혹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현대적인 의식을 추구하는 경우는 성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는 공동 균분 상속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중에서 가부장제에 요인에 의해서만 관련된다. 가부장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준다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추구할수록 공정한 균분 상속에 찬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측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사와 친족에 대한 의식을 추구할수록 양자를 들여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제사와 친족을 중시 할 경우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와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문항만이 가부장제 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대적인 가부장제 의식을 갖고 있을수록 자녀에게 꼭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계의 존속과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을 추구하지 않을수록 자녀에 대한 상속의 당위성을 낮게 인지한다.

3. 부모자녀 관계와 재산상속 의식

1)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과 재산상속 의식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 정도와 상속 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속대상에서는 개방성과 이해의 요인을 제외한 신뢰감과 애착, 기대요인에 따라 재산 상속의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아들에게만 상속한다’는 애착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애착이 높을수록 아들에게만 상속한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애착을 높게 인지할수록 출생순위에 따른 상속보다는 애정의 정도와 기여 혹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과 기대감이 높을수록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문항에 찬성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출생순위와 관계 없이 애착이라고 볼 때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는 부모와 가장 많은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애착은 상속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양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이 된다.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는 문항은 애착의 정도와 부적 상관이 있어 자녀에 대한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에게만 상속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국 가족에서 상속인은 배우자보다는 자녀를 우선 순위의 상속인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자녀보다는 배우자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시기는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속시기는 자녀에 대한 애정보다는 상속 방법 혹은 상속인의 수, 상속대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생전에 상속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고려 사항이자 자녀에 대한 애정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3>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과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

상속의식	문 항	신뢰감	애착	기대	개방성	이해
상속대상	아들에게만 상속	-.055	-.223**	.023	-.055	-.078
	상속 받은 자녀는 부모를 부양	-.032	-.162*	.152*	.061	.004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상속	-.034	-.177**	.126	-.002	-.074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에게 상속	.034	.030	.090	.007	.051
	종가집에 상속	.060	.019	.067	-.007	-.009
	배우자에게 상속	-.026	-.147*	.043	.018	-.067
상속시기	손자녀에게 상속	.089	.038*	-.036	.090	.080
	생전에 미리 한다	.098	.094	-.018	.104	.098
상 속 분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091	-.125	.093	-.008	.007
	여자와 남자의 상속분 차이는 당연	.095	.011	.074	.010	.059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준다	.069	-.027	.033	.012	-.002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	.092	.067	.129	.022	.006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	.183**	.215**	.048	.198**	.169*
아들 없는 경우 상속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	.139*	.048	.210**	.093	.088
	친척에게 상속	-.008	-.151*	.076	-.048	.051
	양자를 들여 상속	-.052	-.093	.028	-.038	.040
상속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독립성을 위해 상속하지 않음	-.30	-.016	.052	.068	.045
	사회에 환원	.035	-.050	.082	.017	.037

* P<.05 ** P<.01

상속분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 한다’는 신뢰감, 애착, 개방성, 이해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와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상속 형태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한다’와 정적 상관이 있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상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대요인은 장남 혹은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자녀에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법적 규정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상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의 상속에서는 애착요인과 ‘친척에게 상속한다’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를 제외하고 친척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에는 자녀 이외의 대상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하지 않는 경우의 예인 양자 상속이나 사회적 환원은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에 대한 애정을 측정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볼 경우 부모자녀 관계 내의 애정의 정도가 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애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의 양에 따라서 자녀를 상속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녀 이외의 상속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 혹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재산상속 의식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정도와 재산상속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상속대상을 보면 ‘아들에게만 상속한다’와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문항은 생활갈등 요인과 부

적 상관이 있다. 생활갈등이 적을수록 위의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 갈등이 적은 경우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문항과 상속받은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즉, 아들인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과 생활에서 오는 갈등이 적을수록 함께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재산 상속을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한다’는 문항은 생활, 세대간, 심리적 갈등 요인과 부적 상관이 있어, 갈등이 높을수록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애착이 가는 자녀라는 관계는 갈등이 적은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의 양이 적은 자녀일수록 상속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상속시기는 생활갈등과 부적 상관이 그리고 세대간 갈등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 생활갈등이 높을수록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상속하는 것에 반대하고 세대간 갈등이 높을수록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생전 상속보다는 사후 상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생전 상속은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간의 갈등이 높은 경우 사후 상속을 선호하는 것은 생전에 상속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부모자녀 간의 가치관과 생활관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대차이가 클수록 원만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후의 상속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갈등이 높은 경우 사후에 상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은 다른 갈등 영역보다는 생활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과 생활갈등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원의 주장과 욕구가 반영될 수 없는 사후상속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분과 아들이 없는 경우의 상속, 그리고 상속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정

〈표 4〉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

상속의식	문 항	생활 갈등	세대간의 갈등	심리적 갈등
상속대상	아들에게만 상속	-.145*	-.075	-.062
	상속 받은 자녀는 부모를 부양	-.177**	-.129	-.118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상속	-.265**	-.184**	-.194**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에게 상속	-.025	-.065	-.051
	종가집에 상속	-.002	-.081	-.124
	배우자에게 상속	-.077	-.051	-.088
상속시기	손자녀에게 상속	-.085	-.005	-.069
	생전에 미리 한다	.020	-.029	-.053
상 속 분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163*	.139*	-.105
	여자와 남자의 상속분 차이는 당연	-.007	-.088	-.112
	남자에게 특별히 많이 준다	-.078	-.101	-.098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	.001	-.022	-.049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	.102	-.007	-.014
아들 없는 경우 상속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상속	.010	-.017	-.0167
	친척에게 상속	-.038	.118	.033
	양자를 들여 상속	-.063	-.010	-.007
상속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독립성을 위해 상속하지 않음	-.064	-.068	-.016
	사회에 환원	.004	-.000	.048

* P<.05 ** P<.01

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속은 갈등의 정도보다는 애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인 무조건적인 애정이 갈등을 상속의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애정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을 살펴보고, 가족 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 가치의식과 부모자녀 관계가 재산상속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대상은 ‘생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과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상속의 시기는

생전에 미리 재산상속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상속하는 것보다는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생활 가치의식과 재산 상속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효에 대한 의식과 성역할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종가집이나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과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효, 제사, 성역할, 가부장제, 친족에 대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과 딸보다 아들에게 혹은 장남에게 특별히 많은 상속분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정도가 높았다. 재산상속의 시기는 친족에 대한 의식이 현대적일수록 생전에 상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와 친족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일수록 양자를 들여 상속하는 것

에 찬성하고 있다.

3) 부모자녀 관계의 애정과 재산 상속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애착이 높을수록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것에 반대하고, 애착과 기대감이 높을수록 상속 받은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찬성하는 반면 자녀와의 애착 정도를 낮게 인지할수록 배우자에게만 상속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4)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재산상속 의식의 관련성에서는 생활갈등이 적을수록 아들 단독 상속과 상속받은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생활갈등을 높게 인지할수록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상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분과 아들이 없는 경우의 상속, 그리고 상속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정도와 관련성이 없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가족의 재산 상속 의식은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보다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분상속보다는 상속 시점까지의 가족생활 경험과 피상속인의 개인적 의식 및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상속시기와 대상, 상속분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피상속인은 상속이 가능한 대상에게 갖는 특별한 감정 즉, 애정 혹은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한 상속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법의 규정보다는 피상속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생전 상속을 원하고 있다. 상속시 피상속인이 가족 내에서 누리고 있는 권위가 확실하고 그 정도가 클수록 또한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이 깊을수록 생전에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르지 않는 불균등 상속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대상에게 재산상속을 한 이후 가족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피상속인인 부모의 권위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산상속은 노부모가 물적 자원을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확실한 지위를 보상받는 교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가족의 생활을 살펴보면, 가족형태는 혼가족이지만 실제적으로 친족간의 유대와 조상을 모시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어 의식면에서도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의 재산 상속 의식은 지위 상속·제사 상속과 연관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의 가족기능과 가족가치에 대한 의미 변화 및 가족 생활 변화 경향은 서구에서와 같이 지위와 제사의 상속 개념은 희박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재산 상속은 지위나 제사의 상속과 상관없이 즉, 성별과 출생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애정이 가는 자녀 혹은 재산을 상속받을 이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가족생활가치 의식과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상속 의식을 상관관계로 분석하여 현재의 경향성을 파악할 뿐 미래에 실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계층에 따라 표본을 세분화하여 심층적인 관찰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재산상속은 재산의 양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원의 양에 따라 상속 행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상속 이후 자원의 흐름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피상속인이 상속 이후에 기대한 것만큼 상속 행위가 보상을 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현(1985).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구(1992). 개정가족법의 특징과 약간의 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33권 1호.
- 김용운(1982). 고려시대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上)(下). 한국사연구 36,37.
- 김은파(1978). 상속형태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 자녀의 지위. 전북사학 2.
- 김주수(1993).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7호.
- 박용운(1985). 고려시대사. 일지사.

- 서상권(1986). 우리 나라의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전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호(1987). “공동상속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한국공동상속법의 성격조명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경희(1991). 한국의 공동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부산대석사학위논문.
- 유혜종(1989). 한국 고대 재산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76).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한국학보 3.
- 이기백(1988). 韓國史新論. 일조각.
- 이상욱(1986). 상속법의 성문화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향(1993). 고려시대 여성의 토지·노비 상속에 대한 고찰.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의권(1983). 고려의 재산상속형태에 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41.
- 임연숙(1995). 고려시대 상속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鄭光鉉(1961).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기호(1987). 고려시대의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 조정문(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 최재석(1970). 한국가족제도연구사. 한국문화사대계 IV. 풍속·예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재석(1981). 高麗朝에 있어서의 토지의 자녀균분상속. 한국사연구 35.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